

의안번호	2212752
의 퇴 인	주진우 의원
회 답 일	2025. 9. 24.
추 계 번호	25F4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 확대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63억원, 2039년 31억원 등 2027년에서 2039년까지 13년간 총 2,511억원(연평균 1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세액감면이 9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9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최대 7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동안 적용되어, 2030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더해 개정안은 100%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씩 확대하므로 세수효과는 최대 2039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제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9년

(단위: 억원)

	'27	'28	'29	'30	'31	'32	'33	'34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의2제1항)	-63	-126	-188	-251	-314	-314	-314	-283
- 적용기한 5년 연장	-63	-126	-188	-251	-314	-283	-251	-188
- 감면기간 2년 확대						-31	-63	-94

	'35	'36	'37	'38	'39	합계	연평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의2제1항)	-251	-188	-126	-63	-31	-2,511	-193
- 적용기한 5년 연장	-126	-63	-31			-1,884	-171
- 감면기간 2년 확대	-126	-126	-94	-63	-31	-628	-78

주: 는 개정안 개별 내용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으로, 개정안 내용별로 세수효과를 산출하여 연평균 금액을 제시할 때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총 세수효과의 연평균 금액과 다를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3조의2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감면율 ①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2년 50% ②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현행) 7년 100% + 3년 50% → (개정안) 9년 100% + 3년 50% ③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추정사유 추가: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집행 부서를 둔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3조의2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등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2023년~2025년(잠정) 감면액의 평균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2022까지는 감면액이 2,000억원 이상이나, 2023년부터는 감면액이 500억원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므로 최근 3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활용함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5년 100% + 2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3년 50% 또는 10년 100% + 2년 50%)¹⁾은 고려하지 않음
 - 추정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므로 그 효과를 추계하기 곤란하여 동 추계에는 추정사유 추가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지 않음
 -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 공장·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 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 감면내용: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 (현행) 7년 100% + 3년 50% → (개정안) 9년 100% + 3년 50%
 -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단, 2022년까지는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본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 (감면실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2025년(잠정치) 기준 490억원

- 2023년 이후 감면실적이 500억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임

[표 2]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¹⁾
감면액	3,032	2,993	727	490	501

주: 1)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감면액은 2025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1) 적용기한 연장의 효과

□ 2023년 이후 감면액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감면실적의 평균치를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평균 감면실적: 534억원

–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31억원* + 100% 감면액 63억원**

* 31억원 = 534억원 ÷ 17 (7년 × 2 + 3년)

** 63억원 = 31억원 × 2

○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5년 100% + 2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3년 50% 또는 10년 100% + 2년 50%)²⁾은 고려하지 않음

[표 3] 적용기한 연장시 연도별 법인세 감면 예상액: 2027~2037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이전법인	-63	-63	-63	-63	-63	-31
2027년 이전법인		-63	-63	-63	-63	-63
2028년 이전법인			-63	-63	-63	-63
2029년 이전법인				-63	-63	-63
2030년 이전법인					-63	-63
계	-63	-126	-188	-251	-314	-283

구분	203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2026년 이전법인	-31						
2027년 이전법인	-31	-31					
2028년 이전법인	-63	-31	-31				
2029년 이전법인	-63	-63	-31	-31			
2030년 이전법인	-63	-63	-63	-31	-31		
계	-251	-188	-126	-63	-31	-1,844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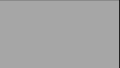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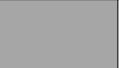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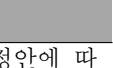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2) 감면기간 확대의 효과

- 개정안은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및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에 100%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5년(7년)에서 7년(9년)으로 각각 2년씩 확대하고자 함
- 이 경우 세수효과는 기존에 법인세를 50%씩 감면받던 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율이 100%로 상승된 효과와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던 기간동안 법인세를 50% 감면받게 되는 효과를 더한 값으로 산출됨
-  구간 세수효과: -31억원 =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100% 감면 적용(-63억원) -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세 50% 감면 적용(-31억원)
 -  구간 세수효과: -31억원 =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법인세 50% 감면 적용(-31억원)

[표 3] 감면기간 확대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6년 이전법인						
2027년 이전법인						
2028년 이전법인						
2029년 이전법인						
2030년 이전법인						

구분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26년 이전법인							
2027년 이전법인							
2028년 이전법인							
2029년 이전법인							
2030년 이전법인							

주: 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되는 구간, 는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100% 감면기간이 2년 확대되는 구간, 는 기존에 감면받지 않다가 개정안에 따른 감면기간 확대로 법인세 50% 감면이 적용되는 구간을 의미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이 2년 확대될 경우 세수효과는 2032년부터 2039년까지 발생함

[표 4] 감면기간 2년 확대시 연도별 법인세 감면 예상액: 2032~2039년

(단위: 억원)

구분	2032	2033	2034	2035	2036
2026년 이전법인	-31	-31	-31	-31	
2027년 이전법인		-31	-31	-31	-31
2028년 이전법인			-31	-31	-31
2029년 이전법인				-31	-31
2030년 이전법인					-31
계	-31	-63	-94	-126	-126

구분	2037	2038	2039	누적	연평균
2026년 이전법인					
2027년 이전법인					
2028년 이전법인	-31				
2029년 이전법인	-31	-31			
2030년 이전법인	-31	-31	-31		
계	-94	-63	-31	-628	-78

다. 추계결과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 확대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63억원, 2039년 31억원 등 2027년에서 2039년까지 13년간 총 2,511억원(연평균 1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액감면이 9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30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9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9년

(단위: 억원)

	'27	'28	'29	'30	'31	'32	'33	'34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의2제1항)	-63	-126	-188	-251	-314	-314	-314	-283
- 적용기한 5년 연장	-63	-126	-188	-251	-314	-283	-251	-188
- 감면기간 2년 확대						-31	-63	-94

	'35	'36	'37	'38	'39	합계	연평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의2제1항)	-251	-188	-126	-63	-31	-2,511	-193
- 적용기한 5년 연장	-126	-63	-31			-1,884	-171
- 감면기간 2년 확대	-126	-126	-94	-63	-31	-628	-78

주: 는 개정안 개별 내용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으로, 개정안 내용별로 세수효과를 산출하여 연평균 금액을 제시할 때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총 세수효과의 연평균 금액과 다를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